

# 연동제 운영

## 문제 있다.

돼지고기 연동 가격제도는 1980년 3월 15일 농수산부 훈령 제453호 육류 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실시되어 오고 있다.

연동제는 돼지고기 등 육류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시장가격(생축가격)의 변동에 따라 소매가격을 조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물론 정육 판매업자들까지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동제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류가격의 연동제는 각 시·도에서 축산물 도매시장의 평균 지육 가격을 조사해서 최근 10일 동안의 가중 평균 가격이 시행중인 연동가격 고시때 적용된 가중 평균치에 비하여 3%

이상 변동이 있을 때 돼지고기 연동가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돼지고기 연동가격 기준표(표 1)에 의하여 조정 고시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실상은 조정 고시가격이 시장가격(산지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늦게 조정되는 관계로 시장가격이 오르면 소매가격은 내려가고 시장가격이 내리면 소매가격은 오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행정적인 요인과 정책적인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보여진다. 10일 동안의 가중 평균치가 3% 이상 변동되면 각 시·도는 즉시 가격을 조정·고시하여야 하는데 관계기관에서는 물가당국과의 협의 및 내부결재과정에서 1주일 이상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어 탄력성을 잃게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최근 6개월간 조정·고시된 가격(표 2)을 보면 평균 1개월에 한번 정도 조정되었는데 그때마다 늦장을 부려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민족을 사고 있다.

〈표 1〉 서울시 돼지고기 연동가격 기준표

(단위: 원)

지육경락가격 (kg당)	적정연동가격 (500g당)
2,000	1,500
2,050	1,550
2,100	1,550
2,150	1,600
2,200	1,650
2,250	1,650
2,300	1,700
2,350	1,750
2,400	1,800
2,450	1,800
2,500	1,850
2,550	1,900
2,600	1,900
2,650	1,950
2,700	2,000

(표 2) 최근 서울시가 고시한 돼지고기 연동가격

(단위 : 원)

고 시 일	연동고시가격 (500g)	기준지육평균가 (1kg)
85. 8. 6	1,600	2,001
85. 8. 23	1,750	2,342
85. 10. 10	1,850	2,504
85. 11. 11	1,900	2,579
85. 12. 6	2,050	2,813
86. 1. 20	1,800	2,447

지난 1월20일 조정 고시된 가격만 보더라도 지육가격 가중 평균치 2,447원을 적용하여 1,800 원에 고시 되었는데 이날 서울시내 3개 도매시장의 평균 지육 경락가격은 2,148원이었다.

가격조정에 있어서 또다른 문제점은 현재 10 일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 는 점을 들수 있다. 10일간의 가중 평균치가 3 %이상 변동하더라도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거

나 반대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1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가중평균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모순이 따르게 마련이다.

둘째, 연동 고시가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연동제 가격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실시된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조정 고시된 가격의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으며 판매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실시시기를 늦추는 등 가격 상승시에는 연동 가격제가 잘 지켜지지만 하락시에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산하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서 1985년도에 접수된 육류 연동제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발은 다른 어떤 식료품 품목보다도 많았다. 동 단체에 접수된 85년도

(표 3) 식품 품목별 가격고발내용 (1985)

품목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곡물가공품				3				1		1	2	1	1	9
콩류가공품	2	2	2	3				1		1	2	1	1	9
과일야채가공품				1				3	2	3				9
수산물가공품		1	1	1							2			5
기호성음료							2	3	7	3			2	17
우유가공품		1						17	6	4	1	3	1	33
감미조미료		2	1				1				1			5
곡물류			1	2	4	1	3			2	2	1		16
육류 (%)	9 (53)	32 (70)	35 (70)	19 (50)	26 (52)	15 (43)	92 (70)	51 (64)	20 (41)	6 (21)	13 (52)	8 (42)	326 (57.3)	
수산물류				1		1						1		3
양념류				1					1			2		4
건강식품류				2	3	1			1			1	4	12
기타			1		2				1	5		2		11
판매업소	6	6	6	12	15	14	11	13	13	9	4			109
계	17	44	50	38	50	35	131	80	52	28	25	19		569

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자료

식품 품목별 가격에 대한 고발건수를 보면 전체 고발건수 569건중 연동제에 관한 것이 326건으로 57.3%나 차지하고 있으며 〈표-3〉 육류에 대한 고발 446건 중에서도 가격에 대한 불만이 326건으로 가장 많은 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소비자 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5년 3월의 연동제 가격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시내 206개 조사대상 업소중 82%인 167개 업소가 돼지고기 고시가격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 자료로 볼때 연동제 가격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연동제 가격이 자유 가격제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때 이 제도가 행정계통이나 판매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기도 하지만 유통부조리를 줄이는데 기여한 바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육류가격의 자율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정육업자들로 구성된 축산기업조합이 지난 1956년부터 1969년까지 13년동안 일종의 가격 카르텔인 「협정가격」을 설정하여 시행한 바가 있는데 이 때 유통상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음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기왕에 시행되는 연동제 가격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 자율화는 고양이에게 고기를 맡기는 격이 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 연동제 가격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다음 몇가지가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연동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겠다.

즉, 각 시·도에서는 시장가격(산지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신속히 가격을 조정하여 명실상부한 적정가격이 되도록 해야하겠다. 빨리 대응치 못하면 연동제 가격의 근본 취지와는 동떨어진 가격으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표 4) 육류 각 부문별 고발내용(1985)

부문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부 패 변 질 (%)		2 (10.53)	1 (2.5)	3 (7.32)		2 (5.88)		1 (0.99)		7 (14.58)	9 (45)	2 (10)		27 (6.03)
가 격 (%)		9 (47.37)	32 (80)	35 (85.37)	19 (59.38)	26 (76.47)	15 (68.18)	92 (91.09)	51 (91.07)	20 (41.67)	6 (30)	13 (65)	8 (61.53)	326 (72.77)
용 량 (%)		2 (21.05)			2 (6.25)		2 (9.09)	1 (0.99)		5 (10.42)		3 (15)	2 (15.38)	19 (4.24)
부 작 용 (%)										2 (4.17)	1 (5)			3 (0.67)
진 위 안 정 성 (%)		2 (10.53)	4 (10)	3 (7.32)	8 (25)	5 (14.71)	5 (22.73)	5 (4.95)	2 (3.57)	11 (22.92)	1 (5)	1 (5)	3 (23.08)	50 (11.16)
기 타 (%)		2 (10.53)	3 (7.5)		3 (9.38)	1 (2.94)		2 (1.98)	3 (5.36)	3 (6.25)	3 (15)	1 (5)		21 (4.71)
합 계 (%)		19 (100)	40 (100)	41 (100)	32 (100)	34 (100)	22 (100)	101 (100)	56 (100)	48 (100)	20 (100)	20 (100)	13 (100)	446 (100)

주)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자료

조정요건만 충족되면 그때 그때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기간을 최소로 단축해서 소비자나 생산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용을 잘하지 못하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자율 평균가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0일동안의 가중 평균치가 조정 고시 당시의 적용치로서는 적합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속 오르는 추세 또는 계속 내리는 추세의 기준 경락가격은 고시 당시를 기준으로 고시전 2~3일 동안의 평균가를 적용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세째,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제도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행정당국에서는 가격을 고시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후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런 하나 하나의 정책이 잘 수행될 때 국민들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동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래 단위가 정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정육점에서는 500g 단위로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도 600g 단위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속히 미터법에 의한 유통가격체계를 확립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업자간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위별 등급제 및 포장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행정당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 유통마진을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연동제 가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각 계의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잘 운영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판매점이 다같이 유통 부조리를 혁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연동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 본지 구독 안내

대한양돈협회 비회원으로서 「월간양돈」지의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해당되는 특별 찬조금을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소액환으로 바꿔 본회 총무부로 등기 우송해 주십시오. 접수 즉시 본회 송료 부담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1년 분 찬조금..... 3 만원

반년 분 찬조금..... 1 만 5 천원